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안내

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

1. 응시원서 작성, 접수 및 변경

가. 작성, 접수 및 변경 기간 : 2024. 8. 22.(목) ~ 9. 6.(금) 09:00~17:00 <토요일, 공휴일 제외>

※ 원서접수처는 점심시간이 없으나, 서류 발급 행정기관은 점심시간이 있으므로 참고

※ 응시원서 작성,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.

나. 작성, 접수 및 변경 장소

※ 변경이라 함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도 포함됨.

※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,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함.
(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)

구 분	작성, 접수 및 변경 장소
졸업예정자	재학 중인 고등학교
졸업자	출신 고등학교 ※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, 출신 고등학교에 접수하는 대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가능 ※ 폐교 졸업자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
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	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
장기입원자, 군복무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	출신(재학) 고등학교,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,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중 희망하는 장소 ※ 단, 출신 고등학교가 속한 시험지구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가 동일할 경우, 출신 고등학교로 접수
수형자	실제 거주지(수형시설 소재지)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 후 접수 진행

◆ **시험편의제공대상자(중증/경증 시각장애, 뇌병변 등 운동장애, 중증/경증 청각장애 등 수험생)**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작성, 접수 및 변경 장소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서울맹학교, 서울농학교,
서울삼성학교, 한빛맹학교
졸업(예정)자</td><td>출신(재학) 학교</td><td></td></tr>
<tr><td>중증 시각장애</td><td rowspan="3">중부교육지원청</td><td rowspan="6">※ 출신(재학) 고등학교를 경유하여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개별 접수</td></tr>
<tr><td>뇌병변 등 운동장애</td></tr>
<tr><td>중증 청각장애</td></tr>
<tr><td>경증 시각장애</td><td>남부교육지원청</td></tr>
<tr><td>경증 청각장애</td><td rowspan="2">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</td></tr>
<tr><td>기타 시험편의제공대상자</td></tr>
</table>

다. 시험지구별 관할 행정구역

시험지구	관할 행정구역	교육지원청	전 화
동부	동대문구, 중랑구	동부교육지원청	02-2210-1244
서부	마포구, 서대문구, 은평구	서부교육지원청	02-390-5544
남부	구로구, 금천구, 영등포구	남부교육지원청	02-2165-0257
북부	노원구, 도봉구	북부교육지원청	02-3499-6844
중부	용산구, 종로구, 중구	중부교육지원청	02-708-6536
강동송파	강동구, 송파구	강동송파교육지원청	02-3434-4334
강서양천	강서구, 양천구	강서양천교육지원청	02-2600-0841
강남서초	강남구, 서초구	강남서초교육지원청	02-3015-3334
동작관악	동작구, 관악구	동작관악교육지원청	02-810-8343
성동광진	성동구, 광진구	성동광진교육지원청	02-2286-3634
성북강북	강북구, 성북구	성북강북교육지원청	02-944-9332

2.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

가. 공통 제출 서류

○ **응시원서(기록용)** 1통 (원서접수처에 비치)

○ **여권용 규격 사진**(가로 3.5㎝×세로 4.5㎝) **2매** (응시원서 부착용)

○ **응시수수료** 납부 영수증 1통

응시 영역 수	4개영역 이하	5개영역	6개영역
응시수수료(원)	37,000	42,000	47,000

※ 응시수수료 납부 방법

구분	납부처	납부방법
재학생	재학 중인 학교	학교에서 지정하는 방법(스쿨뱅킹, 가상계좌 등)
졸업생 등	출신 학교	현금 ※ 카드 및 기타 납부 불가
	시험지구 교육지원청	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

○ **신분증** (원서접수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지참)

※ 주민등록증(모바일 확인서비스 가능),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, 운전면허증(모바일 확인서비스 가능),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(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첨부), 외국인등록증,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(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), 학생증(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부착,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, 학교장직인 날인)

여권사진규격

▣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(2024. 2. 23. 이후)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(가로 3.5㎝×세로 4.5㎝)으로, 머리의 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)가 3.2㎝~3.6㎝이어야 함.

▣ 머리카락,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.

▣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/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.

▣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.

※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(www.passport.go.kr) 여권사진규정 참조

나. 추가 제출 서류

※ 아래 대상자에 한하며, 모든 추가 제출 서류는 **원본 제출**을 원칙으로 함.
※ 추가 제출 서류에 주민번호가 표기된 경우,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**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기**되어야 함.

대상자	제출 증빙서류	비고
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자	• **주민등록초본(원본, 주소 확인용, 2024. 7. 23. 이후 발급)** 1부 ※ 주소 확인용 증빙서류는 지원자 가족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기본으로 하되, 지원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허용	이외에 해당 서류 추가 제출
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	•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II 교육과정(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)을 86단위(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)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**직업계열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** 1부 ※ 단, 재학(출신) 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	
고등학교 졸업자	• **졸업증명서(원본 또는 NEIS 발급분)** 1부 ※ 졸업증명서는 발급담당자 성명이 기재된 원본 또는 NEIS 발급분 ※ 단,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 시 제출하지 않음	
검정고시 합격자	• **합격증 사본(원본 지참) 또는 합격증명서** 1부	
기타 학력인정자	• 해당 사례별 증빙서류 1부 ※ 단, 기타 학력인정자 중 외국 학력인정자가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과거 제출 증빙서류*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	*보관기간 : 5년
외국 학력인정자	• **외국 해당교(최종학력) 졸업증명서(한글번역 공증)** 1부 • **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(한글번역 공증, 학년제 확인 용도)** 1부 - 재외국민의 현지 여건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, 영사확인(해당 학교의 학력인정 여부 확인 목적)을 받아 제출 ※ 외국 학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외국 해당교(최종학력) 졸업증명서, 전학년 성적증명서에 대해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에 따른 번역인[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에서 규정한 "번역인"(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 포함)]이 번역한 서류를 공증인(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)에게 공증 •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: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가능 •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: 아포스티유 인증 불가, 영사확인만 가능 • **국내 최종학력증명서** 1부 • **출입국사실증명서** 1부 ※ 재외 한국 학교 졸업(예정)자: 해당교 졸업(예정)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	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<table>
<tr><th>대상자</th><th>제출 증빙서류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소속 부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군복무자</td><td>• 군복무확인서(증명서) 1부
-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나, 군복무 중인 현역병(또는 상근예비역)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(보충역, 전시근로역 등)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발급대상</th><th>발급처</th></tr>
<tr><td>군복무확인서(증명서)</td><td>입대 후 한 달이 지난 군인</td><td>해당 부대 인사과</td></tr>
<tr><td>병적증명서
(입영사실확인서)</td><td>입대 후 한 달 이내에 해당하는 훈련병 등</td><td>정부24 및
인근 주민센터</td></tr>
</table>
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 기재된 군복무확인서를 신분확인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(13자리)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신분증 등)를 함께 제출</td><td>출신 학교로 지원자 본인이 접수 시, 제출할 필요 없음</td></tr>
<tr><td>시험편의제공대상자</td><td>•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[서식(8쪽)] 1부
•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(원본 지참) 1부
• ①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이 없거나 분실한 경우
②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상 시각장애 정도가 “경증”으로 표시된 경우
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상 시각장애 제6급에 해당하는 경우
③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상 청각장애 정도가 ‘경증’으로 표시된 경우
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상 청각장애 제4급부터 제6급에 해당하는 경우
④ 기타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
⇨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및 학교장 확인서(또는 특수학교 재학(졸업)증명서) 각 1부
<table>
<tr><th>제출 서류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1부
(2023. 8. 23. 이후 발급)</td><td>7쪽 ‘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’ 확인
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</td></tr>
<tr><td>학교장확인서
또는 특수학교 재학(졸업)증명서 1부</td><td>검정고시 합격자 등 출신 학교가 없는 경우 및 기타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제출하지 않음</td></tr>
</table></td><td>★ 유형별 제출 증빙서류 : 5~6쪽 [붙임] 반드시 확인</td></tr>
<tr><td>입원 중인 환자</td><td>• 입원확인서 1부</td><td></td></tr>
<tr><td>수형자</td><td>• 수감확인서 1부</td><td></td></tr>
<tr><td>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</td><td>• ① 졸업생, 검정고시 합격자, 기타 학력인정자
② 재학생 중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
③ 학교에서 접수하는 학생 중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내역 (기초생활보장, 한부모가족 등)이 반영되지 않은 재학생
⇨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증빙 서류 제출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제출 서류</th></tr>
<tr><td>국민기초생활수급자</td><td>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법정차상위계층</td><td>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</td></tr>
<tr><td>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</td></tr>
<tr><td>자활근로자 확인서</td></tr>
<tr><td>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</td></tr>
<tr><td>차상위계층 확인서</td></tr>
<tr><td>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</td><td>한부모가족 증명서</td></tr>
</table>
※ 해당 증빙 서류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(2024. 7. 23. 이후) 발급분부터 유효</td><td>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 급여내역이 반영된 학생
⇨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면제 처리</td></tr>
</table>

붙임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유형별 원서접수 제출 증빙서류

(공통 제출)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※ [서식(8쪽)]

❑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

구분	대상	제출 증빙서류
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 장애인	○ 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상 시각장애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	○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(원본 지참)
	○ 20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상 시각장애 정도가 "중증"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	

❑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

구분	대상		제출 증빙서류
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 장애인	○ 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상 시각장애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로 제작된 문제지를 신청하지 않은 수험생		○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(원본 지참)
	○ 20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상 시각장애 정도가 "중증"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로 제작된 문제지를 신청하지 않은 수험생		○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(원본 지참)
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 장애인	○ 좋은 눈의 시력이 0.2 이하인 사람 ○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○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	○ 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상 시각장애 제4급부터 제5급까지에 해당하는 수험생	○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(원본 지참)
		○ 20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상 시각장애 정도가 "경증"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	○ ①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(원본 지참), ②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[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③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(졸업) 증명서를 함께(①+②+③) 첨부
	○ 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인 사람	○ 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상 시각장애 제6급에 해당하는 수험생	○ ①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(원본 지참), ②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(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) 및 ③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(졸업)증명서를 함께(①+②+③) 첨부
		○ 20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상 시각장애 정도가 "경증"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	
		○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이 없는 수험생	○ ①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(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) 및 ②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(졸업) 증명서를 함께(①+②) 첨부
	○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[복시(複視)]이 있는 사람	○ 20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상 시각장애 정도가 "경증"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	○ ①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(원본 지참), ②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(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) 및 ③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(졸업)증명서를 함께(①+②+③) 첨부
		○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이 없는 수험생	○ ①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(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) 및 ②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(졸업) 증명서를 함께(①+②) 첨부

❑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

구분(대상)	제출 증빙서류
뇌병변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	○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(원본 지참)
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	○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(원본 지참) ○**장애인증명서** ※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(2024. 7. 23. 이후) 발급분부터 유효함.
손, 목, 눈 등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답안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한 수험생	○①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(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) 및 ②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(졸업) 증명서를 함께(①+②) 첨부

❑ 청각장애 수험생

구분	대상	제출 증빙서류
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 장애인	○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상 청각장애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	○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(원본 지참)
	○20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상 청각장애 정도가 "중증"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	○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(원본 지참)
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 장애인	○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상 청각장애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	○①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(원본 지참), ②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[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③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(졸업) 증명서를 함께(①+②+③) 첨부
	○20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상 청각장애 정도가 '경증'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	○①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(원본 지참), ②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[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③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(졸업) 증명서를 함께(①+②+③) 첨부
	○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이 없는 수험생	○①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[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②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(졸업) 증명서를 함께(①+②) 첨부

증빙서류 세부사항

▣ 기본 증빙서류: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(원본 지참)

▣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이 없거나 분실한 경우

⇨ **①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**(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) 및 **②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(졸업) 증명서**를 함께(①+②) 제출

▣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재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상에 장애등급이 없는 경우 / '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상 시각장애 제6급' / '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상 청각장애 제4급부터 제6급'에 해당하는 경우

⇨ **①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**(원본 지참), **②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**(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), **③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(졸업)증명서**를 함께(①+②+③) 제출

①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※ 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

- **진단서상에 장애 유형 및 정도,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, 필요한 편의제공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함.**
  ※「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」(7쪽) 확인
- 진단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「병원·약국 찾기」 서비스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(1644-2000)에서 확인된 지역별 종합병원의 병원장이 발행하고, 종합병원 전문의의 면허번호 및 서명(날인)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.
- 진단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**최근 1년 이내(2023. 8. 23. 이후)에 발급**된 것이어야 함.
- 검사기록은 병력 및 과거 진료기록, 장애의 원인 질환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의미함.

②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(졸업) 증명서

- 학교장 확인서는 (담임)교사 소견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.
  ※ 단, 졸업생의 경우 (담임)교사의 전출 등의 사유로 (담임)교사 소견 기재가 힘든 경우 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는 "확인 내용 없음" 등으로 기재 가능
- 특수학교 재학(졸업)생은 재학(졸업) 증명서로 학교장 확인서 대체
- 검정고시 합격자 등 출신학교가 없는 경우 미제출

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

□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
○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(예시표 표기 내용 1)

○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(예시표 표기 내용 2)

○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판단 여부 (예시표 표기 내용 3)

□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
예시) 점자문제지,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
"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"

〈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표 〉

장애유형 및 정도		예 시
시각장애	중증	상기인은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으로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아, 2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사람으로서, 3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	경증	상기인은 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으로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2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, 2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3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뇌병변 등 운동장애	-	상기인은 1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사람으로서 2 손,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표기에 어려움이 있어 3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청각장애	중증	상기인은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이며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, 2 일정 거리 이상에서 발생한 소리를 듣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일반적 형태의 듣기평가가 어려워 3 듣기평가를 대체한 지필고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
※ 진단서는 원서접수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(2023. 8. 23. 이후)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.

[서식]

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

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신청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·조회를 하고자 합니다. 관련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개인정보 제공 • 조회 동의
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신청 서류 확인을 위해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해당 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는 제공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. 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: **관계행정기관 및 종합병원** 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• 관계행정기관 및 종합병원: **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 장애인증명서, 진단서 등의 조회** -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**개인 식별 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), 연락처, 주소, 시험편의제공 신청내역 서류 등** 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• 관계행정기관 및 종합병원: **관련 서류 확인 절차 완료시까지** ※ 개인정보 제공·조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.
귀 교육(지원)청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·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)
귀 교육(지원)청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·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)

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에 동의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성명 _____ (서명)

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